국제무역과 수출입절차

1-1. 수출절차의 개요

수출절차란 수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이 허용된 물품을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수출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과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을 정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은 후 통관절차 등을 규정한 관세법에 따른 세관통관절차를 거쳐 운송인에게 인도 또는 운송수단(선박, 항공기)에 적재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출환어음 매입 및 대금회수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정적·법규적·상관습적 흐름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출절차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의 국내무역관련 법규와 국제상관습과 연관하여 이루어진다.

1-2. 수출단계별 절차

이하에서는 수출거래의 가장 보편적인 거래형태인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출계약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무역관련 법규에 의해 수출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거래시장을 탐색하여 이를 결정하고 시장조사단계를 거쳐 그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거래선을 물색한 후, 그와의 거래를 제의하여 거래선의 동의를 얻게 되면 수출계약이 체결된다.

일반적으로 수출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피청약자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이 되지만 향후 만약에 발생될 수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2)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에 따라 수입업자는 주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며,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출국 현지의 통지은행(Advising Bank)을 통해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통지한다.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는 수출입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계약물품의 품명, 규격, 단가, 선적기일, 보험조건, 대금결제조건 등이 계약조건과 상이한 점이 있는가를 상세히 검토하여야 하며,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신용장조건을 변경하도록 그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취하면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계약내용과의 일치 여부
② 취소불능신용장인지의 여부
③ 개설은행 신용상태
④ 특수조건 및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검토
⑤ 지급확약 문구
⑥ 오탈자의 존재 여부, 단가와 합계의 정확 여부 등

[그림] 무역과 수출입 물류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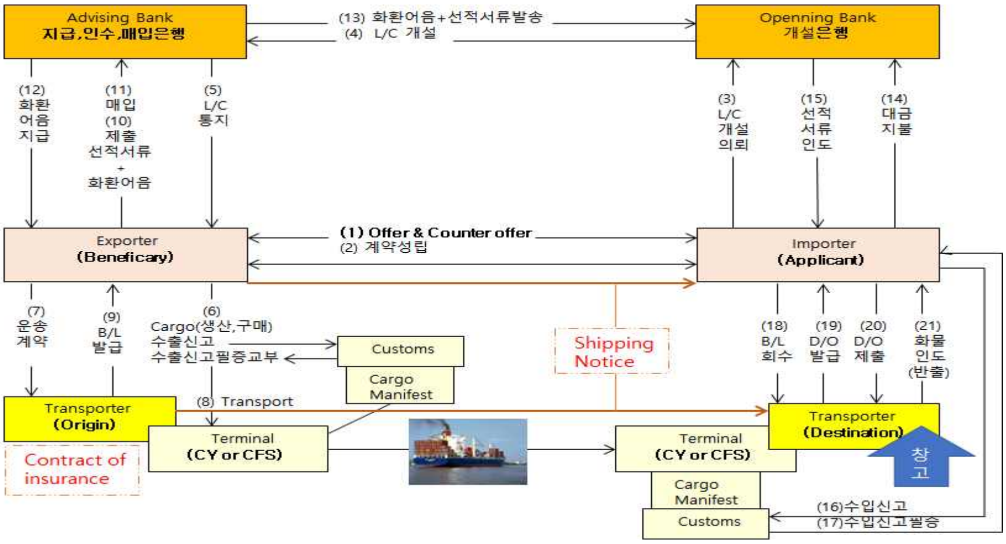

(3) 수출승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수출입 공고나 통합공고 등에서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에 당해 수출품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물론 수출입 공고상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되는 지정품목도 당연히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수출업자는 수출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물품의 수출승인기관에 신청하고 수출승인을 받으면 수출승인서를 획득하게 된다.

(4) 수출물품의 확보 및 검사

수출업자는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제조 · 생산(혹은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확보)[1]이 완료되면 수출통관절차를 밟기 전에 수출검사를 받게 된다. 수출검사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출신고하기 전에 수출품의 품질과 대외공신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그 물품의 제조과정 또는 완제품에 대하여 그 물품과 재료의 품질 및 포장상태를 검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2]

수출검사는 제조 · 생산업체가 실시하는 제품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으로 품질보증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국가기준에 따라 지정된 검사물품을 일률적으로 검사하고 이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수출을 금지시키는 것이 수출검사의 특징이다.

(5) 운송 · 보험계약 체결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의 제조 · 생산이 완료되면 수출물품을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업자(Carrier)를 물색, 선정하여 구체적인 운송을 협의한 후 운송인과 운송계약

1) 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내국신용장(Local L/C) 혹은 구매확인서로 이를 활용하는 이유는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이다.
2) 수출 신고된 물품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검사를 받는다.

을 체결하고 선적을 준비해야 한다.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하주(Shipper, 수출업자)는 물품을 보낼 때 수하인(Consignee, 수입업자), 선적항(Loading Port, 수출항), 양하항(Discharging Port, 목적항), 화물의 명세(Particular 또는 Description of Cargo) 등 소정의 운송정보를 기재하여 선박회사에 정식으로 선복요청서(Shipping Request, S/R)를 제출하고 예약이 되면 체결된다. 컨테이너화물이나 그 밖의 잡화물은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을, 원자재와 같은 대량살화물(Bulk cargo)일 경우에는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계약이 일반적이다.

한편, CIF나 CIP조건에 의한 수출일 경우에는 수출업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출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ICC(C)의 110%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6) 수출통관절차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각종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 중에서 최종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수출통관절차이다.

현행 수출통관절차는 수출신고가 서류 없이 EDI로 신고내용을 세관에 전송하면 세관에서 컴퓨터상의 신고화면을 확인하고 신고수리를 신고자에게 전산 통보해 주는 EDI 수출통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현물검사를 받고 관세법상 적법한 물품인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7) 선적(Shipment)

세관의 수출면장을 얻은 수출화물은 선적되어 목적지로 운송되어야 한다. 선적이란 수출화물을 본선상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본선적재는 선박회사가 화물의 포장상태, 적재수량, 화물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일등항해사는 선박회사에서 발행한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하여 화물수령에 대한 증거로서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발급한다. 이때 선적지시서에 기재된 사항과 실제로 적부된 화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유보사항으로 M/R면에 해당 사항이 기재된다. 이상유무사항이 Remarks란에 기재된 M/R을 고장수취증(Foul Receipt)이라고 하며, 이상유무사항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무고장수취증(Clean Receipt)이라고 한다. 이때 고장수취증의 경우의 선하증권은 고장부가 된다.

고장부(또는 사고부)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이러한 불완전한 선하증권을 담보로 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각종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하주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제공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주는 선박회사측에 화물을 인도하고 본선수취증을 입수하여 지체 없이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에 가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하주에게 교부한다.

(8) 수출대금회수

물품을 수출한 자는 승인된 결제방법에 의하여 유효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수출대금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통관과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과 제반서류, 즉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P),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등을 준비하고 환어음(Bill of exchange or draft)을 발행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Negotiation, Nego)을 의뢰한다.

(9)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수출이 완료될 경우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상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업자는 관세환급을 받아야 비로소 실제 당해 수출 선적분에 대한 손익을 당초 예상손익과 비교하여 볼 수 있으므로 환급기관인 세관장 앞으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2-1. 수입절차의 개요

수입절차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계약서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에 의하여 수입허가(승인)를 받고 외국환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도래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2-2. 수입단계별 절차

(1) 수입계약체결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무역관련 법규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확인, 국내외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해외 공급업자 선정 후 해외 공급업자(혹은 수입업자)의 청약과 수입업자(혹은 해외공급업자)의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수입계약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 수출업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수령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매매계약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매매계약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원격지 간의 상거래행위로서 물품과 대금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무, 책임의 범위와 한계, 가격조건 등을 양당사자가 가 명확히 정하여 두는 것이 사후에 발행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수입승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전에 해당 물품의 수입여부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행위 이전에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요건인 수입자격, 수입품목, 수입지역,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의 적법성에 관해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최종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수입승인을 얻으려면 우선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수입승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수입제한승인 해당 물품

에 관한 승인권한은 대부분 각각 해당 물품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되어 있다.

(3) 수입신용장 개설 및 통지

수입업자는 수입승인을 받은 후 수입승인의 유효기간(통상 1년)과 수입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국에 소재하는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신용장개설 통지를 한다.

수입업자는 수입승인서 및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구매계약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에 신용장의 제조건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이에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수출국의 통지은행 앞으로 신용장을 전신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며, 이를 받은 통지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하게 된다.

(4) 수입대금 결제 및 운송서류 인수

물품을 선적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근거하여 관련운송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보험증권 등)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의뢰하고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한다.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내도된 운송서류를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도착 통지를 한다.

운송서류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운송서류를 인도 받아 수입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하증권 대신에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를 받아 운송회사에 제시함으로써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나중에 원본서류를 은행에 제출한다.

(5) 수입통관 및 수입신고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수입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일련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입통관신고는 하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수입화물을 수입승인서에 명시된 물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검사생략물품도 있음),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관세 등을 부과·징수하고 수입면장을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한다.

(6) 물품의 인수와 반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한 수입신고인은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사본)을 제시하고 운임 및 창고료 등을 정산한 후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를 교부받아 제출한 후 물품을 인수하여 해당수입화물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으로써 수입절차가 종료된다.

제2차 REPORT

1. 제목 : 제4부 국제무역과 수출입 절차 용어 정리
   - 제공된 국제무역과 수출입절차 내용 중에 있는 무역용어 정리
   - 무역관련 서적이나 네이버 검색을 이용

예) 1.신용장(L/C; Letter of Credit)
무역대금의 결제 및 상품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발행은행)이 수입자(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매입은행 등의 선의의 환어음 소지인)에게 신용장에서 지시하는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직접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타은행을 통하여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매입이 이루어질 것을 확약하는 증서(instrument)이다.

2. 분량 : 자유

3. 제출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기말고사시험지와 함께 제출